

이사회 회의록 (2023-1차)

(2023. 1. 19. 11:00–12:00)

학교법인 숭의학원

씨 정수	尹頃洙	이상운	김경찬,
임진	尹鎭		

이사회 회의록 (2023-1차)

회의소집 통보일자 : 2023. 1. 4	
이사정수 : 8인	재적이사 : 8인
감사정수 : 2인	재적감사 : 2인

1. 회의일시 : 2023. 1. 19(목) 11:00

2. 회의장소 : 법인회의실

3. 참석임원 : 이사(6인) 백정수, 윤순희, 이상열, 김경찬, 윤인호, 김중곤

4. 불참임원 : 이사(2인) 류성목, 유태균

감사(2인) 최정희, 박동진

5. 회의안건 :

- 의안 제1호 : 정관변경(안)
- 의안 제2호 :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의안 제3호 : 고등학교 교원 징계혐의 발생의 건
- 의안 제4호 :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
- 의안 제5호 : 각 학교 교원 인사

6. 회의내용

- 백정수 이사장이 재적이사 6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윤순희 이사 기도에 이어 전회 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2022-8차 이사회(2022.11.29) 회의록을 낭독하다.
- 김경찬 이사가 전회 회의록을 그대로 받기로 하며 동의하자, 윤인호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므로 전회 회의록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백정수 baek jungsu	윤순희 yoon sun-hee	이상열 lee sang-yeol	김경찬 kim kyung-chan
baek jungsu	yoon sun-hee	lee sang-yeol	kim kyung-chan

1. 의안 제1호 : 정관변경(안)

- 백정수 이사장이 의안 제1호 정관변경(안)을 부의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정관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라 승의학원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정관 변경(안) 관련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다.
- 이상열 이사가 정관 변경(안) 내용을 살펴본 바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제정결함보조금 지원 인원수가 개정되었고, 현재 사항과 틀린 용어 변경과 사문화 조항 삭제 등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윤인호 이사 동의와 김경찬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백정수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정관 변경은 [별첨1] 정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2. 의안 제2호 :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백정수 이사장이 의안 제2호 교원징계위원회 설치를 부의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승의여자고등학교에서 승의여자고등학교-27(2023.01.03.) 「교원 징계 제청」으로 교원 징계제청이 있었기에 사립학교법 제62조와 정관 제55조에 의거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윤순희 이사가 각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 중 이상열 이사, 윤인호 이사, 김중곤 이사, 김경찬 이사를 추천하고, 고등학교 교원 중 이선명 교사, 임소향 교사, 전성희 교사를 추천하고, 외부위원으로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오용환과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인 남영은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경찬 이사 동의와 김중곤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백정수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법인 이사 중 이상열 이사, 윤인호 이사, 김중곤 이사, 김경찬 이사, 고등학교 교원 중 이선명 교사, 임소향 교사, 전성희 교사, 외부위원 오용환, 남영은을 2023. 1. 20부 학교 법인 승의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백정수	홍삼기	이상열	김경찬.
윤순희	김중곤		

3. 의안 제3호 : 고등학교 교원 징계혐의 발생의 건

- 백정수 이사장이 의안 제3호 고등학교 교원 징계혐의 발생의 건을 부의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숭의여자고등학교에서 숭의여자고등학교-27(2023.01.03.) 「교원 징계 제청」으로 교원 징계제청이 있었기에 징계혐의가 발생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와 제64조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심의하여야 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윤인호 이사가 고등학교 교사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으로부터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 공문이 접수된 사항으로 징계 제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김중곤 이사 동의와 이상열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백정수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숭의여자고등학교 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와 제64조에 의거하여 징계의결요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4. 의안 제4호 :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

- 백정수 이사장이 의안 제4호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을 부의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교육부에서 사립대학정책과-14713호(2022.12.05.) 「2022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신청 안내」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교육부에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중 학교법인이 부담할 최소액 이상을 승인 신청 하여야 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김중곤 이사가 우리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수익용 건물을 취득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였으나, 우리 법인의 운영 수입 등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숭의여자대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하다.
- 김경찬 이사가 현재 우리 법인의 재정여건상 숭의여자대학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원안대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윤순희 이사 동의와 이상열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백정수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백정수	홍삼기	이상열	김경찬

■ 결의사항

- 1)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 승인 신청금액 : 443,190,000원
- 2) 202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부담 승인 신청금액 : 40,000,000원
- 3) 재정여건 개선계획 : 법인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 부동산 (건물) 임대 활성화 등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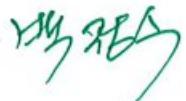
5. 의안 제5호 : 각 학교 교원 인사

- 백정수 이사장이 의안 제5호 각 학교 교원 인사를 부의하다.
- 홍삼기 총무차장이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고등학교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면직, 정년퇴직, 복직, 대학교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 각 학교 교원 인사사항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하다.
- 이상열 이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는 올바른 교육정신으로 사제동행을 실천하며, 근면 성실하여 타 교사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대학교 교원 인사는 업적 평가와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 사항이므로 각 학교 교원 인사는 원안대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윤순희 이사 동의와 김중곤 이사 재청에 이어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 백정수 이사장이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의초등학교 교감직무대리 임태홍은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하여 자격 취득후 2023. 9. 1부 교감으로 임용하고, 승의여자고등학교 교사 강구술은 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하여 자격 취득후 2023. 9. 1부 교감으로 임용, 교사 이승후는 2023. 1. 1부 의원면직, 교사 김홍섭은 2023. 2. 28부 정년퇴직, 교사 장승현, 배민, 이지영, 양명우는 2023. 3. 1부 복직, 교사 장승현은 2023. 3. 1부 의원면직하고,
승의여자대학교 차선미는 2023. 1. 1부 조교수 신규 임용(임용기간 : 2023. 1. 1~2024. 12. 31 : 2년 - 계약제), 부교수 김순하는 2023. 3. 1부 기간제 재임용(임용기간 : 2023. 3. 1 ~ 2025. 8.31 : 정년 - 기간제), 조교수 백지희, 백지원, 양지안, 심유진, 강웅기, 최동호, 김상경은 2023. 3.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3. 1 ~ 2025. 2.28 : 2년 - 계약제), 강의전담 조교수 김유경, 양정임, 홍미영, 이근종, 석중휘는 2023. 3.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3. 1 ~ 2025. 2. 28 : 2년 - 강의전담), 산학협력 조교수 이근수, 유아미, 이인숙은 2023. 3.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3. 1 ~ 2025. 2.28 : 2년 - 산학협력), 조교수 김정화, 김봉선, 유경숙, 김시우, 조현일은 2023. 4.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4. 1 ~ 2025. 3.31 : 2년 - 계약제), 강의전담 조교수

백정수	홍삼기	이상열	김경찬
윤순희	김중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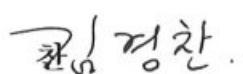
장지은, 신정혜는 2023. 4.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4. 1 ~ 2025. 3.31 : 2년 - 강의전담), 산학협력 조교수 이승미, 장수연, 홍성익은 2023. 4. 1부 재계약 임용(임용기간 : 2023. 4. 1 ~ 2025. 3.31 : 2년 - 산학협력)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를 끝마친다. (폐회 12:00)

2023.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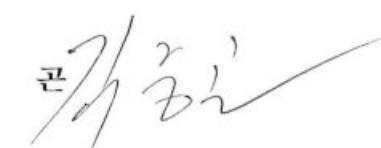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백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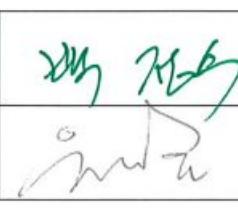
이사윤순희 

이사이상열 

이사김경찬 

이사윤인호 

이사김중곤 

백정수	이수현	이상열	김경찬
			

<별첨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승의학원

현 행	변 경(안)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교직원 제35조(임용) ①~⑦항 (생략) ⑧<신설> ⑨<신설>	제5장 교직원 제35조(임용) ①~⑦항 (현행과 같음) ⑧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할 수 있다.
제35조의4(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年 1月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⑧항 (생략)	삭제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중·고등학교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4. 중·고등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6. (생략) 7. <신설> 8. <신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서훈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6. (현행과 같음) 7. 초·중·고등학교 신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8. 초·중·고등학교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서재석	尹喚石	이상열	김경한.
서재석	尹喚石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숭의학원

현 행	변 경(안)
<p>제49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p> <p>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제49조(인사위원회 조직)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p> <p>② <좌동></p>
<p>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p> <p>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p> <p>③인사위원회의 회무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p> <p>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0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p> <p>② <좌동></p> <p>③ <좌동></p> <p>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좌동></p> <p>②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p>	<p>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좌동></p> <p>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p>
<p>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p> <p>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p>	<p>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좌동></p> <p>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p>
<p>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p>	<p>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세부 규정으로 정한다.</p>

백정숙	조현아	이상연	김경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승의학원

현 행	변 경(안)
<p>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신설> 2. <신설> 가~마. <신설></p> <p>③. <신설> 1~5. <신설></p>	<p>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p> <p>1.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p>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신설>	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상열	김경찬.
이상열	김경찬.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승의학원

현 행	변 경(안)
<p>제8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1~7. (생략)</p> <p>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p> <p>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p> <p>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하려는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p> <p>⑥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p> <p>⑦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7. (현행과 같음)</p> <p>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p> <p>② <좌동></p> <p>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좌동></p> <p>⑥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p> <p>⑦ <좌동></p>
<p>제9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90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p>	<p>제9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9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p> <p>②안건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p>	<p>제9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p> <p>②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좌동></p>

이상열	김경찬
2023. 1. 26.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숭의학원

현 행	변 경(안)
제95조(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한다. ②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5조(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 ② <좌동>
제96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96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13조(청렴의무) <신설>	제113조(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의 2(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	제113조의 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제11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②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14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정호	조현호	이상열	김경찬
2023. 2. 21. ✓	2023. 2. 21.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학교법인 숭의학원

현 행	변 경(안)
(별표 2) 고등학교 합 계 9명 5급(부참사) 1명 7급(부주사) 2명 9급(부서기) 6명	(별표 2) 고등학교 합 계 9명 5급(부참사) 1명 7급(부주사) 3명 9급(부서기) 5명
중 학 교 합 계 5명 6급(주 사) 1명 8급(서 기) 1명 9급(부서기) 3명	중 학 교 합 계 6명 6급(주 사) 1명 8급(서 기) 2명 9급(부서기) 3명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백재숙	조현미	이상열	김경환
임수연	정수연		